

[’18년 3차 (순경)채용시험 문제-경찰학 개론]

01.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8.3채용>

- ①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“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,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”라고 규정하였다.
-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, 프랑스 「죄와형벌법전」에서 유래하였다.
- ③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‘비경찰화’라고 하는데, 위생경찰,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.
- ④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X) - **프로이센 일반란트법**(1794) : 18세기 칸트 등의 계몽주의사상과 자연법사상의 영향으로 제정된 프로이센 **일반란트법**은[♣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(X)] “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, 안녕 및 질서를 **유지**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**방지**하기 위하여 필요한 **기관**(필요한 **조치**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**직무**이다.)” (§10②17호)이라고 규정하였다.<10·13승진·13경간·12.2·18.3채용> [☉일유 방기(조직)]
- ② (O) -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은 3권 분립 사상에서 유래하는 것으로, **프랑스의 ‘죄와 형벌법전(경죄처벌법)’** 제18조에서 “**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유지·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,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·체포를 목적으로 한다.**” 고 최초로 규정한데서 유래한다. [♣독일경찰학에서 유래(X), ♣영국에서 확립된 구분(X)]<14승진·13경간·04·09·12·18.3채용>
- ③ (O) - **비경찰화의 대상 ➡ 협의의 행정경찰사무(예 철도경찰, 도로경찰, 산업경찰, 산림경찰, 건축경찰, 보건경찰, 공물경찰, 경제경찰, 영업경찰, 위생경찰 등)**<05승진·03·18.3채용>
- ④ (O)

02.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8.3채용>

-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,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

한다.

-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,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,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.
-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,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,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.
-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,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, 방법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O) - 예방경찰 : **순찰활동**[♣범죄의 제지(X)]<12승진·03경간·04·09채용>, **총포·화약류의 취급제한**[♣진압경찰(X)]
진압경찰 : **범죄의 제지**[♣예방경찰(X)]·**진압·수사**, **범인의 체포**<12승진·03경간·04·09채용>, 사람을 공격하는 **멧돼지 등 동물의 사살**<18.3채용>, (위해를 주는) **정신착란자의 보호조치**, (위해 우려)**정신착란자의 보호조치**<11.1·18.3채용>
- ② (O) - 보안경찰 : 해양경찰, 교통경찰, 소방경찰 **풍속경찰**[♣협의의 행정경찰(X)], 생활안전경찰, 경비경찰, 경찰하명, 경찰허가, 경찰강제<06·18.3채용> [●해교소풍생활경비하명강제]
협의의 행정경찰 : 철도경찰, **도로경찰**, 산업경찰, 산림경찰, 건축경찰, **보건경찰**, **공물경찰**, 경제경찰, **영업경찰**, **위생경찰**[♣풍속경찰(X)]<09·18.3채용> [●철도산건 공경영 위협]
- ③ (X) - 행정경찰 : **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범위가 같다**. [♣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(X)]<14승진·18.3채용>
사법경찰 : **형식적 의미의 경찰**에 포함[♣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(X)]<13·14승진·18.3채용>
- ④ (O) - 질서경찰 : **경찰처분**(**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분**), 경찰강제(강제집행·즉시강제, 진압), 다중범죄진압, **범죄수사** 등[♣수난구호(X)]<12.1·18.1채용>
봉사경찰 : **방법지도**, 청소년 선도, 교통정보의 제공, **수난구호** 등<12.1·18.1채용>

03. 한국 근·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<18.3채용>

-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·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·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.
- ② 「경무청관제직장」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(장으로 경무관을 둠)하였다.

- ③ 3·1운동 이후 「치안유지법」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「정치범처벌법」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.
- ④ 1894년 「각아문관제」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.

정답: ④

해설:

- ① (X) - 식민지기에 일본은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**총독의 제령권**과 **경무총장 · 경무부장 등의 명령권(命令權)**을 통하여 **전제적·제국주의적인 경찰권을 행사**하였다.[♣경무총장의 제령권(X)]<13승진18.3채용>
- ② (X) - 한국 **최초의 경찰조직법인 ‘경무청관제직장’**을 통해 **좌·우포도청을 합하여** 한성부에 **경무청을 창설(長은 경무사)**하였다.[♣경무관(X)]<03·12·13·14승진·01경간·12.2·13.1·18.2·3채용>
- ③ (X) - 3·1 운동을 계기로 **‘정치범 처벌법’을 제정**하였고 일본에서 제정된 **‘치안유지법’을 한국에 적용**하여 탄압적 지배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.[♣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적용, 치안유지법 제정(X)]<05·13승진·14·15경간18.3채용>
- ④ (O) - 친일 김홍집 내각은 6월14일 ‘각 아문관제’에서 **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**하고, 경찰을 **법무아문 하에 창설할 것을 의결하였다**가 동년 7월1일 경찰의 소속을 **내무아문으로 변경**시켰다.[♣외무아문(X), ♣내무아문에 창설하였다가 법무아문으로 변경(X)]<18경간·13.1·18.3채용>

04. 「경찰법」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8.3채용>

-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- ② 경찰, 검찰, 법관,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- ④ 심의·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.

정답: ②

해설:

- ① (O) - 경찰법 제7조 제1항<06·18승진·08·18경간·09·12.1·13.1·15.3·16.2·17.1·18.3채용>
- ② (X) - **검찰, 경찰, 국정원 직원, 군인, 당직,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(이탈)한 날로부터 3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[♣법관(X)](제6조 제4항)<09·13·17·18승진·06·12경간·11·13·14.2·18.3채용> [☹검경국군당선]
- ③ (O) - 경찰법 제7조 제3항<12·14경간·17승진·14.2·18.3채용>
- ④ (O) - 경찰법 제9조 제1항<17·18승진·12.1·18.3채용>

05. 「국가공무원법」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-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(간접적인 경우 제외)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
정답: ②

해설:

- ① (X) -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**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**를 받아야 한다.[♣소속 기관장의 허가(X)](국공법 제62조)<17경간·99·12·15·18승진·01·12·15.2·16.1·18.3채용>
- ② (O) - 국공법 제55조<18.3채용>
- ③ (X) - 공무원은 **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**는 직장이탈을 하지 못한다.[♣소속기관장 허가(X)](국공법제58조 제1항)<17경간·14승진·15.2·17.2·18.3채용>
- ④ (X) - 공무원은 (대외적으로) **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**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[♣간접적인 경우 제외(X)](국공법 제61조 제2항)<13승진·17.1·18.3채용>

06.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<18.3채용>

- ①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,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, 적법요건은 아니다.

-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.
- ④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·급부·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O) - 상대적 금지만 허가의 대상이 됨,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.<18.3채용>
- ② (X) -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다.[♣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(X)]<04·10승진, 04·09·18.3채용>
- ③ (X) - 신청 시가 아니라 허가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(학설·판례)으로 판단한다.[♣신청당시의 법령이 기준(X)]<02행시·09·18.3채용>
- ④ (X) -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·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,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.[♣작위, 수인, 급부의무 해제(X)]<12경간·02·18.3채용>

07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.
-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.
-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.
-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O) -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.(제4조 제2항)<17.1·18.3순경>
- ② (X) -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·친지 그 밖의

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,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.[♣24시간 이내예(X)](제4조 제4항)<12·16·18승진·14.1·17.1·18.3채용>

- ③ (X) - 피구호자를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구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 → 경찰관서에서의 일시보호 조치는 **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**.[♣6시간이내(X)](제4조 제7항)<16승진·14.1·17.1·18.3채용>
- ④ (X) - **대물즉시강제**[♣대인즉시강제(X)](제4조 제3항)<18.3채용>

08.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㉠ 계층제의 원리-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.
- ㉡ 통솔범위의 원리-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, 단순반복 업무보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.
- ㉢ 명령통일의 원리-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.
- ㉣ 조정과 통합의 원리-조직의 구조, 보상체계,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.

- ① ㉠㉡ ② ㉠㉢ ③ ㉠㉣ ④ ㉡㉢

정답: ②

해설:

- ㉠ (O)<05·09·13·14·16·18승진·12.2·18.3채용>
- ㉡ (X) - **전문성·창의성·복잡성** → 전문적·창의적이고 복잡한 업무일수록 **통솔범위 축소**[♣확대(X)]<18.3채용>
- ㉢ (O)<09·18승진·18.3채용>
- ㉣ (X) - **장기적 대응방안**으로[♣단기적 대응(X)] **조직의 구조, 보상체계,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**이 있다.<17승진·18.3채용>

09.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·분류·접수·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,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.
-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(共用)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(模寫)·타자(打字)·인쇄·조각·녹음·촬영·인화(印畵)·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(再現)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(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I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X) -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·분류·접수·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 **I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**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, **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**로 관리한다. [♣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(X)](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)<18.3채용>
- ② (X) - **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(共用)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(模寫)·타자(打字)·인쇄·조각·녹음·촬영·인화(印畵)·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(再現)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**[♣I급 밀(X)](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1항)<18.3채용>
- ③ (O) -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항<18.3채용>
- ④ (X) - **각급기관의 장은**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**보존기간 내에서 ‘복사 등 금지’ 예외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.**[♣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(X)](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항)<18.3채용>

10. 다음은 ‘범죄 통제이론’을 설명한 것이다.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8.3채용>

- ① ‘일상활동이론’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‘범행의 동기’, ‘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’, ‘범행의 기

술', '범행의 기회'이다.

- ②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'집합효율성이론'을 주장하였다.
- ③ '치료 및 갱생이론'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.
- ④ '억제이론'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X) - **범죄의 4대 요소** ➡ **Joseph F. Sheley(실리)**는 범죄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필요조건으로[♣충분조건(X)] 아래 4가지를 제시하였다.(**범죄의 필요조건**)[♣일상활동이론(X)] <09경간·10·14승진·10·13.2·15.2·18.3채용>
- ② (O) - **집합효율성이론** : **로버트 샘슨과 동료들**<14.1·18.3채용>
- ③ (O) - '치료 및 갱생이론' : **자유지 부정, 결정론, 주관주의, 사회책임, 치료와 갱생, 특별예방**
- ④ (O)<05·14.1·18.3채용>

11. 「경범죄 처벌법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<18.3채용>

-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「경범죄 처벌법」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.
-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정답: ②

해설:

- ① (O) - 불안감 조성 :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·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(文身)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[♣소매치기할 생각으로 따라다닌 경우(X)]<14.2·18.3채용>
- ② (X) -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**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**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**청구를 취소하여야** 한다.[♣취소 할 수(X)](제9조 제2항)<04승진>
- ③ (O) -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<17.1·18.3채용>
- ④ (O) -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<18경간18.3채용>

12. 「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」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8.3채용>

- ① “가출인”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- ② “장기실종아동등”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.
- ③ “보호실종아동등”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.
- ④ “발견지”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,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O) -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6호<14승진·12.3·18.3채용>
- ② (O) -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5호<14·17승진·12경간·12.2·3·17.1·18.3채용>
- ③ (X) - “보호실종아동등”이란 **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**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.[♣보호자가 확인되어(X)](제2조 제4호)<18.3채용>
- ④ (O) -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8호<14·17승진·12.2·17.1·18.3채용>

13. 「경찰 비상업무 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“필수요원”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.
- ② “지휘선상 위치 근무”라 함은 감독순시·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,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O) - 비상업무규칙 제2조 제5호<18.3채용>
- ② (X) - 정위치 근무 : 감독순시 ·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**관할구역 내에 위치**하는 것[♣지휘선상 근무(X)](제2조 제3호)<15승진·13.2·18.2·3채용>
- ③ (X) - 을호비상 : 지휘관과 참모 **정위치근무 원칙**[♣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(X)]<13.2·18.3채용>
병호비상 : 지휘관과 참모 **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 원칙**[♣지휘선상 근무(X)]<09·18.3채용>
- ④ (X) -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까지 **동원할 수 있다**. [♣하여야(X)](제7조 제1항)<18.3채용>

14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<18.3채용>

- ①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.
-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.
-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.

-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.

정답: ②

해설:

- ① (O) - 시행규칙 별표18<02·03·04·05·14·16·17승진·11.2·14.1·16.1·17.1·18.3채용>
 ② (X) - 제2종 보통면허 : 승용자동차 · 승합자동차(승차정원 **10인 이하**), 화물자동차(적재중량 **4톤 이하**), 원동기장치자전거, **특수자동차(총중량 3.5톤 이하, 구난자동차 등 제외)**[♣4톤 화물자동차 운전불가(X)]<14·16·17승진·12경간·14.1·18.2·3채용>
 ③ (O) - 시행규칙 별표18<02·03·04·05·14·16·17승진·11.2·14.1·16.1·17.1·18.3채용>
 ④ (O) - 제1종 대형면허 : 승용자동차 · 승합자동차 · 화물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특수자동차[**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(구난차 등) 제외**]<18.3채용>

※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.

건설기계: 노상안정기, 아스팔트살포기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, 콘크리트펌프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덤프트럭, **천공기(트럭 적재식)**, 3톤 미만의 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트럭지게차[●노아곤덤 천공 3개 미만 보수(하)지]<03승진·09채용>

15. 아래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<18.3채용>

1. 일반기준

가. ~ 마. <생략>

바. 처분기준의 감경

(1) 감경사유

(가)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, ㉠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,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.

1) ㉡ 혈중알코올농도가 0.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

2)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
3)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

4) 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

5) ㉣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

① ㄱ

② ㄴ

③ ㄷ

④ ㄹ

정답: ③

해설:

감경 사유	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[♣2년 이상(X)]<18.3채용>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
감경 제외 사유	① 혈중알콜농도가 0.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[♣0.15퍼센트 이상(X)]<18.3채용>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[♣물적 피해 교통사고(X)] ♣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면허취소정지처분 감경제외 사유에 해당한다.(X)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[♣3년 이내(X)]<18.3채용> [♣무사고무위반 서약을 1년간 실천한 운전자(X)]

16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“주최자”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-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,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.

정답:

해설:

- ① (X) - 주최자는 주관자(主管者)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**위임할 수 있다**. 이 경우 **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**.[♣질서유지인(X)](제2조 제3호)<12승진·14.1·16.1·18.3채용>
- ② (X) -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**18세 이상의 사람**을 질서유지인으로 **임명할 수 있다**.[♣임명하여야(X)](제16조 제2항)<01·13승진·13경간·12.1·17.2·18.2·3채용>
- ③ (X) - **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**에 속하는 경우에는 **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** [♣경찰청장에게(X)] 제출하여야 한다.(제6조 제1항 단서)<14.1·17.1·18.3채용>
- ④ (O) - 제16조 제3항<18.3채용>

17.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(INTERPOL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(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)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,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.
- ②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(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)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.
-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,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.
- ④ 국가중앙사무국(National Central Bureau)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.

정답: ①

해설:

- ① (O)<11경간·18.3채용>
- ② (X) - **1923년 비엔나에서**[♣제네바에서(X)] **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(ICPC: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)를 창설하게 되었다**.<18.3채용>
- ③ (X) - **국제형사경찰기구(ICPO)발족 :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(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)가 발족하였고, 사무총국을**

파리에 두었다.[♣리용에(X)]<18.3채용>

- ④ (X) -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여, 현재 **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**에서 KNCB(한국국가중양사무국)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[♣국제협력과(X)]<18.3채용>

18. 「범죄인 인도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, 우리나라 「범죄인 인도법」에 명문규정은 없다.
- ②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범죄인이 「범죄인 인도법」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.
- ④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④

해설:

- ① (X) - **범죄인인도법 제6조(인도범죄)** :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, 무기징역, 무기금고, **장기 1년 이상**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.(쌍방가벌성의 원칙)[♣명문규정이 없다.(X)]<02승진·18.3채용>
- ② (X) -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: 범죄인의 **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** 대한민국 법원에 **재판이 계속 중인**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**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** 경우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.[♣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.(X)](제9조 제3호)<15.2·17.1·18.1·3채용>
- ③ (X) -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**3일 이내**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.[♣48시간 이내에(X)](제13조 제2항)<18.3채용>
- ④ (O) - 제14조 제2항<18.3채용>

19. 「경찰 인권보호 규칙」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때,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,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.
-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,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,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.

정답: ③

해설:

- ① (X) - 위원회는 **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** 이때, **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.**[♣15명 이하(X)](제5조 제1항)<13승진·18.3채용>
- ② (X) - **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1회, 지방경찰청은 분기1회** 개최한다.[♣경찰청 분기1회, 지방청 월1회(X)](제11조 제2항)<18.3채용>
- ③ (O) - 제7조 제1항<13·17승진·18.3채용>
- ④ (X) -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,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**위촉된 날부터** 기산한다.[♣전임자의 잔임기간(X), ♣다음날부터(X)](제7조 제2항)<18.3채용>

20. 「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<18.3채용>

- ① 특정한 정책·사업·조직·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.
-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.
-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,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·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·확인·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④

해설:

- ① (X) - **성과감사** : 특정한 정책·사업·조직·기능 등에 대한 **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** 실시하는 감사[♣특정감사(X)](제4조 제1항 제4호)<18.3채용>
- ② (X)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.(제11조 제2항)
1.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2. 그 밖에 **경찰청장이** 감사담당자로서 **부적당하다고 인정**하는 사람[♣지방경찰청장이(X)]<18.3채용>
- ③ (X) - **경고·주의**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**경미**하거나,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**재가 필요**한 경우 경고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.[♣하야야(X)](제21조 제3호)<15경간18.3채용>
- ④ (O) - 제7조 제1항<18.3채용>